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 추진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7월 11일 김승동의원, 김원재의원
의 19인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7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7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 7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의원)

□ 주 문

경기도와 건설교통부 등이 추진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의 하부공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며 별지와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 제안이유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건설당시부터 부천시의 남북을 관통하며 도시를 동서로 양분시킴으로써 시가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해 오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도로임. 여기에다가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음. 최근 동 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에서 주민들이 승소하여 겨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이렇듯 상부의 고속도로 하나만으로도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막대한 지역임.
- 이렇듯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터에 경기도와 건교부가 다시 고속도로 하부공간까지 추가로 도로를 개설하여 상부의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은 대체도로로서의 효율성은 차치하고도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희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바 부천시의회는 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 추진에 대해 단호하게 반

대 입장을 표명하고 경기도와 건교부에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 하고자 함.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동결의안에 내용에 대해 시장이 도지사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는지?	○ 도지사를 만나 도로사용에 대해 우리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여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음
○ 외곽순환고속도로에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외곽순환소도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외곽순환고속도로 1개차로 비상용 도로를 활용하면 교통정체가 완화 될 것이며, 부개동에서 장수동까지 도로를 확충하면 될 것임.
○ 교통정체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 끼치고 있음. 그러나 하부공간을 도로로 사용하면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어 분진 및 소음으로부터 피해가 감소 될 수 있는데?	○ 하부공간에 도로를 건설하더라도 여러개의 신호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므로 교통정체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소음과 분진도 더 악화될 우려가 있음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 추진 반대 결의문

의안 번호	제134호
의결 년월일	2007. 7. 19 (제137회)

발의년월일 : 2007. 7. 11.

발 의 자 : 김승동·김원재
의원등21인

1. 주 문

경기도와 건설교통부 등이 추진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의 하부공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며 별지와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2. 제안이유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건설당시부터 부천시의 남북을 관통하며 도시를 동서로 양분시킴으로써 시가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해 오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도로임. 여기에다가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음. 최근 동 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에서 주민들이 승소하여 겨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이렇듯 상부의 고속도로 하나만으로도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막대한 지역임.
- 이렇듯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터에 경기도와 건교부가 다시 고속도로 하부공간까지 추가로 도로를 개설하여 상부의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은 대체도로로서의 효율성은 차치하고도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희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바 부천시의회는 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 추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경기도와 건교부에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 하고자 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 추진 반대 결의문

부천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도시를 동서로 양분함으로써 시가지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등 건설당시부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로임은 물론 계속해서 늘어나는 교통량에 따른 소음과 분진은 그동안 상동신도시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도로공사와 토지공사가 50대 50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또한 최근에는 주민 3,347명이 제기한 소음피해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주민 승소 판결을 하는 등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과 그 책임소재가 정부공기업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방음벽 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은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와 고통은 더욱 커져가고만 있다.

이러한 지역 실정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도와 건교부가 동 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하부공간에 추가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정체 현상은 경인고속도로와 일산, 김포, 계양 IC에서 진입한 차량들이 장수IC를 거쳐 남동, 시화공단으로 진출하는 데서 주로 기인하는 교통량으로 정체현상 역시 하루 종일이 아닌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동 구간 하부를 대체도로로 사용한다 하여도 시가지 구간의 잦은 신호대기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대체효과가 전무함은 물론 고속도로 서측에 밀집되어 있는 4개 학교 학생 4,500명의 등하교길 안전만을 더욱 위협하게 될 소지가 있는바 효율성이

없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전형적인 예산낭비형 사업이 될 공산이 자명하다.

더구나 고속도로의 정체현상이 부천시민보다는 통과교통량의 과다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과 피해를 유독 부천시민이 그것도 상부 고속도로의 소음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떠 안아야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불공평 처사로서 있을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또한 동 고속도로 하부공간은 부천시와 도로공사가 1998년부터 8년간이나 긴 협상 끝에 전체 부천시 구간 3.27km중 80%인 2.62km를 부천시가 나머지 20%인 0.65km를 도로공사가 사용하기로 2006년 8월 협약을 체결하였고 부천시는 동 구간을 시민 체육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하부공간 이용계획에 관한 용역을 완료하는 등 이미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바 이를 돌이켜 무효화 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림은 물론 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것이다.

또 경기도는 부천시민에게 하부공간 부지 대신에 다른 곳에 체육시설을 대체 설치하여 줄 것을 제안하지만 이는 주민들의 반대 이유가 도로개설에 따른 소음 분진, 교통사고위험 등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즉 사태의 본질을 모르고 접근하는 어처구니없는 대안임에 일고의 가치도 없을 뿐이다.

이렇듯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 계획은 상부 고속도로의 정체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 할 수 없을뿐더러 인근 주민들과 주변학교 학생들에게 소음, 분진, 교통사고위험 등의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는 86만 부천시민의 뜻을 받들어 경기도와 건교부의 서울외곽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 추진계획에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경기도와 건교부는 부천시민에게 소음, 분진, 교통사고위험 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부천시는 당초 도로공사와의 협약하여 사용하기로 한 하부공간에 대하여 기 용역결과 확정된 시민체육시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라.
3. 건교부는 부천시민의 행복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동 고속도로 소음, 분진 피해 저감 대책마련에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7월 19 일

부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